

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3일

화 성 시 장

1. 행정예고명 :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

2. 취 지

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내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입장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나.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라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4. 주요내용

가. 목 적 :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추가 설치

나. 대 수 : 3대

다. 위 치

시설명	주소	대수	상세위치	비고
계		3		
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	2	3F 문화유적스튜디오 내부	추가설치
		1	2F 사이언스랩 내부	

5. 공고기간 : 2020. 11. 23.(월) ~ 2020. 12. 13.(일) [20일간]

6. 의견제출
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기일 : 2020. 11. 23. ~ 2020. 12. 13. (20일간)

다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(기한 내 도달 기준), 팩스 등

라. 기재내용 : 의견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

마. 제출기관 : 화성시청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

1) 주 소 :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화성시청 아동보육과

2) 전 화 : 031-5189-6569

3) 팩 스 : 031-5189-1579

바. 그 밖의 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사 업 명	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
	주 소		전화번호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
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[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]			
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
2020년 월 일			
제출자 :		(서명 또는 인)	
<b style="font-size: 1.2em;">화 성 시 장 귀하			